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소 등 설립 및 운영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연구처), 02-970-9091

제정 1996. 10. 1.

전부개정 2020. 12. 28.

일부개정 2021. 6. 18.

학칙개정 2021. 10. 1.

일부개정 2022. 7.13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17조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에 두는 연구시설 중 연구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학칙개정 2021. 10. 1.)
- 제2조(적용 범위) 연구소 등 설치·통합·폐지·청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 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연구소 등의 분류) ① 연구소 등은 일반연구소, 대학특성화연구소, 특정사업 연구소로 분류하며, 연구소별 주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일반연구소: 존속기간의 제한 없이 설치하여 특정 연구분야를 공동으로 연구

- 2. 대학특성화연구소: 한정된 기간 동안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를 목표로 본교의 지원을 받아 특정 연구분야를 공동으로 연구
- 3. 특정사업연구소: 외부기관과의 연구(사업) 협약 또는 연구(산학)협력 협약 체결에 의하여 특정 사업 또는 특정 과제를 해당 사업 기간 또는 과제기간 동안 수행
- ②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소 등은 [별표 1]과 같다.(학칙개정 2021, 10, 1,)
- ③ 대학특성화연구소는 목적 달성 시 일반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다.

제2장 설치ㆍ통합ㆍ폐지ㆍ청산

제4조(설치 목적) 연구소 등의 설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기존 연구소가 전담하지 않는 학문 연구영역의 연구를 수행
- 2. 기존의 연구소로서는 불가능한 대외연구비 수주와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통해서 본교의 연구위상을 제고하고 학술연구진흥에 기여
- 3. 기타 총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
- 제5조(설치 요건 및 절차) ① 연구소 등은 운영에 필요한 시설, 공간, 인력, 운영비, 연구비 확보계획 등이 명확할 때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연구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명칭, 목적,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연구처장에게 연구소 등 설치를 신청해야 한다.
 - ③ 연구처장은 연구소 등의 설치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연구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제6조(통합·폐지) ① 총장은 연구소 등의 연구기능 및 학문 활동이 다른 연구소와 유사하거나 연구영역이 중복되는 경우 조직 운영과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 등을 통합할 수 있다.
 - ② 총장은 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연구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 등을 폐지할 수 있다.
 - 1. 연구소 등의 운영위원회가 폐지를 결의할 때
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소 등의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 실적이 없을 때
 - 3. 법령. 학칙 및 규정 등을 위반할 때
 - 4. 연구소 평가 결과가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일 때
 - ③ 특정사업연구소는 지원사업 종료 또는 외부기관과의 협약 기간 만료로 폐지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④ 제2항 제2호의 수행 실적 기준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」의 연구분야 평과 결과를 활용한다.
- 제7조(청산) ① 연구소 등을 폐지하는 때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.
 - ② 연구소 등의 청산절차는 연구소 등의 폐지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 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③ 연구소 등의 잔여자산으로서 건축물(공간) 및 기구, 비품 등의 비현금성 자산은 대학의 자산으로 귀속 조치한다.
 - ④ 연구소 등의 현금성 자산은 회계별 자산으로 귀속 조치한다.

제3장 조직 및 운영

- 제8조(조직 및 역할) ① 연구소 등에는 소장을 두며, 해당 연구소의 규정에 따라 부소장, 부(실)장 및 간사 등을 둘 수 있다.
 -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교원 및 연구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.
 -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.
 - ④ 연구소 등에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」 제90조에 따른 연구 전담 초빙교원과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원 인사 규정」 제3조에 따른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.
- 제9조(소장 등의 임명) ① 해당 연구소 소속인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을 호선하여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부소장은 연구소 소속 본교 교원(연구 전담 초빙교원 포함) 또는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10조(재정 및 회계) ① 연구소 등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하며, 연구소장이 집행한다.
 - 1. 정부, 지자체,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
 - 2. 산학협력을 통한 수입(교육과정 운영, 장비 임대 등)
 - 3. 연구소 인센티브
 - 4.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
 - 5. 기타 수입
 - ② 연구소 등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회계연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 본교는 재정, 시설, 공간 및 지원인력 등을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연구소 평가 "우수"등급 이상, 대학발전을 위한 특성화연구소 지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다.

제4장 평가 및 감사

- 제11조(평가) ① 총장은 연구소 등의 설립 목적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.
 - ② 연구처는 연구소 등의 평가항목, 방법,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총장은 평가 결과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, 제재 및 존속 여부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.
- 제12조(감사) ① 연구처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감사의 시기, 방법 및 결과의 적용은 감사 부서와 협의하여 연구처장이 정한다.

제5장 기타

제13조(운영지침) 그 밖에 연구소 등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(제572호, 2020. 12. 2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618호, 2021. 6. 1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규정 제635호, 2021. 10. 1.) (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695호, 2022. 7. 1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연구소 등 현황(제3조 제2항)

연번	연구소명	설립일자	비고	연번	연구소명	설립일자	비고
1	안전과학연구소	1990-10-22	제1호	26	산업기술정책연구소	2009-06-30	제1호
2	제품개발연구소	1990-10-22	제1호	27	친환경자동차기술연구소	2010-02-25	제1호
3	정밀기계기술연구소	1991-01-07	제1호	28	디자인정보기술연구소	2010-07-27	제1호
4	건설기술연구소	1991-04-30	제1호	29	미래융합소재연구소	2010-07-27	제1호
5	전기정보기술연구소 (제2호 지정일: 2021,01,15.)	1999-07-20	제2호	30	기초학문융합연구소	2011-07-20	제1호
6	좋은사회연구소	1999-07-20	제1호	31	한국전통고유기술연구소	2011-07-20	제1호
7	뉴레일연구소	2003-08-20	제1호	32	스마트생산기술연구소	2011-11-08	제1호
8	IT융합정책연구소	2003-10-14	제1호	33	글로벌경영연구소	2012-02-21	제1호
9	철도연구소	2003-12-30	제1호	34	첨단공예기술연구소	2014-01-18	제1호
10	나노생산기술연구소	2004-01-31	제1호	35	한국디자인경영연구소	2017-07-26	제1호
11	의료전자연구소	2004-01-31	제1호	36	뉴미디어영상연구소	2017-07-26	제1호
12	청정기술연구소	2004-03-04	제1호	37	loT융복합기술연구소	2017-11-13	제1호
13	식품바이오연구소	2004-06-08	제1호	38	방호안전연구소	2018-03-18	제1호
14	미래기계기술연구소	2004-09-01	제1호	39	NDT실증연구센터	2018-07-01	제1호
15	응용화학연구소	2005-01-28	제1호	40	건축공간리질리언스연구소	2019-05-01	제1호
16	스포츠과학연구소	2005-01-28	제1호	41	분말기술연구소	2019-10-01	제1호
17	기능성 바이오소재연구소	2005-06-29	제1호	42	에너지융합연구센터 (제2호 지정일: 2021,01.15.)	2021-03-01	제2호
18	에너지환경연구소 (제2호 지정일: 2021.01.15.)	2005-09-06	제2호	43	건설미래인재연구소	2021-03-01	제1호
19	환경기술연구소 (제2호 지정일: 2021.01.15.)	2005-11-22	제2호	44	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	2021-03-01	제1호
20	IT융합기술연구소	2007-11-29	제1호	45	열유체융합연구소	2021-03-01	제1호
21	유니버설 디자인 이니셔티브 연구소	2008-05-20	제1호	46	Al·반도체연구소	2021-04-13	제1호
22	U-건설관리공학연구소	2008-10-15	제1호	47	차세대 에너지소재 연구소	2021-08-04	제1호
23	건축기계설비연구소	2008-10-15	제1호	48	철도소재부품융합연구센터	2021-08-04	제1호
24	화장품종합기술연구소	2009-03-05	제1호	49	도자문화산업연구소	2021-08-04	제1호
25	미래주거환경연구소	2009-04-02	제1호	50	반도체융합연구소	2021-09-27	제1호

연번	연구소명	설립일자	비고	연번	연구소명	설립일자	비고
51	3D프린팅 융합기술연구소	2021-10-14	제1호				
52	스마트건축기술연구소	2021-11-29	제1호				
53	교통투자정책기술연구소	2021-12-30	제1호				
54	우리문화콘텐츠연구소	2022-02-15	제1호				
55	디지털혁신연구소	2022-03-21	제1호				
56	메타버스경영연구소	2022-04-08	제1호				